

##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어린 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른 남자와 동거상태에 들어갔다면, 며느리의 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글/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의 아들 A가 처(B)와 어린 딸(C)를 남겨두고 사고로 사망하였다.(본인은 C의 친조부이다) A가 사망하자 B는 사고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뒤 C를 보육시설에 보내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거상태에 들어갔다. 본인이 보육시설을 찾아가 할아버지인 본인이 C를 양육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보육시설 책임자는 친권자인 B의 승낙 없이는 C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한다. 대책은?

A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A가 사망한 현시점에서 미성년자인 C의 친권자는 모친인 B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24조) C의 친조부인 귀하에게는 친권상실심판청구권이 있다. 문제는 B의 행위가 친권상실사유가 되는 것이다.

먼저 B가 A사망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사유인 현저한 비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B가 C를 부양할 만한 경제력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비록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더라도 C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고 있다면 자의복리를 우선시하여야 하므로 B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B에게 그러한 경제적 궁핍 또는 질병의 발병 등으로 C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보여질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C를 보육시설에 맡겨버린 것이라면 이는 친권의 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여지가 높아 보인다.

따라서 귀하는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B를 상대방으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제기하여 B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만약 재판도중이라도 B의 친권행사를 중지시켜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로 친조부인 귀하를 선임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